

나무 전지작업 중 이동식사다리에서 떨어짐 사고

(중부본부 2018-21-51-005)

재해개요

- 2018.03.07(수) 16:00경 인천광역시 ○○구 소재 ○○아파트단지 도로변에서 울타리 안쪽 나무 전지작업을 위해 원예용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전지작업 하던 중 떨어짐 사고 발생

재해상황도



재해발생 원인

- 개인보호구(안전모) 상태 및 착용 부적정
 - 턱끈 고장 및 모체가 경화된(제조연도 2006년) 안전모 사용
 - 재해자가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고(공동작업자 진술) 작업 시행하고, 떨어질때 안전모가 탈락이 되어 신체 보호되지 않았음
- 이동식사다리 부적합품 선정
 - 해당 이동식사다리는 KS규격 미인증 제품이며,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디딤발판이 물결모양 등의 표면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직선무늬로 돼 있음
- 작업방법 부적정
 - 작업높이 370cm에서 두께가 지름 7cm정도의 나뭇가지를 재해자 혼자서 톱질할 경우, 작업자의 무게 이동중심이 사다리에서 떨어짐에 따라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한 떨어짐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고소작업 도구로서 이동식 사다리 선정은 부적정

재해예방대책

- 보호구(안전모)적정 착용 [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32조 및 33조, 44조]
 - 보호구(안전모)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적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
- 작업발판 및 고소작업대 사용 [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42조, 186조]
 -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, 이동식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실시하거나
 - 차량탑재형 또는 자체추진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실시